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208호

시행일자 2018. 2. 12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암학회장

참 조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1. 관련 근거 :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722호(2018. 2. 9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'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'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'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-29호, 2018. 2. 9)하고,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정보-약제정보-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'란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'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'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요개정내역]

○ 변경: 1항목

구 분	개 정 사 항
항암요법 급여기준	○ 악성흑색종에 'vemurafenib' 단독요법 · 투여대상, 투여단계 변경

(대의협 제813-12208호) 시행일자 2018. 2. 12

붙 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